

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1453 |
|------------|------|

2023년 12월 19일  
교 육 위 원 회

#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3. 상정일자 :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 
(2023년 12월 19일 상정·원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교육행정국장 박상근)

#### 1. 제안이유

- 외국문 제증명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외국문 제증명수수료 징수(제3조 단서조항) 관련 조항 삭제하여 외국문 제증명수수료 무료화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53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항(제3조 단서 조항)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.

서울시교육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4조<sup>1)</sup>에 따라 교육청 사무 및 국가 등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156조 제1항<sup>2)</sup>에 따라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제증명 수수료

---

1) 「지방자치법」제154조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) 「지방자치법」제156조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생략

③ 생략

와 전·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나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에는 징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<sup>3)</sup>,

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문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일 경우 무료인데 반해, 교육청 및 소속 학교(기관)에서 발급받을 시 1통에 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지난 5개 연도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, 2018년부터 수수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, 5개 연도 평균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는 약 9백만원으로 자체수입원으로서의 비중도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.

[표-1] 서울시교육청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 수입 현황

(단위: 원, %, 건수)

| 구분          | 2022년     | 2021년     | 2020년     | 2019년      | 2018년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교특회계        | 1,580,200 | 1,739,300 | 1,620,300 | 2,373,800  | 2,636,200  |
| 학교회계        | 5,109,930 | 5,641,800 | 5,750,300 | 9,274,500  | 10,360,930 |
| 합계          | 6,690,130 | 7,381,100 | 7,370,600 | 11,648,300 | 12,997,130 |
| 전년대비<br>증감률 | △9.4%     | 0.1%      | △36.7%    | △10.4%     |            |

- 또한 전국 시·도교육청의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, 현재 17개 시·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·도교육청에

3)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[시행 2014.12.30.] [서울특별시조례 제5777호, 2014.12.30., 일부개정]

[별표1]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수수료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| 20,000원 |
| <삭제>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삭제>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삭제>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삭제>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합격증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문 증명   | 600원    |

서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만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[표-2] 전국 시·도교육청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 규정 현황

| 시도교육청   | 자치법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국문 제증명<br>수수료 규정<br>여부 | 폐지일자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서울      |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| O                       | 2014. 12. 30. |
| 부산      |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1. 12. 28. |
| 대구      | 대구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3. 9. 30.  |
| 인천      |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 5. 14.  |
| 광주      | 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6. 9. 15.  |
| 대전      |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 12. 28. |
| 울산      | 울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 8. 1.   |
| 세종특별자치시 | 세종특별자치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 7. 2.   |
| 경기도     | 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3. 11. 7.  |
| 강원도     | 강원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3. 7. 26.  |
| 충청북도    |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5. 5. 15.  |
| 충청남도    | 충청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4. 4. 30.  |
| 전라북도    |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2. 10. 5.  |
| 전라남도    | 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6. 12. 22. |
| 경상북도    |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5. 9. 24.  |
| 경상남도    | 경상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3. 10. 24.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특별자치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| X                       | 2011. 5. 18.  |

-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무료인 인터넷 발급과의 행정적 일관성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민원인들의 비용부담과 불편도 경감시킬 수 있는 수익적 행위라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Ⅴ. 토론요지 : 없음

Ⅵ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Ⅶ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 호

#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종류 및 금액)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통마다 600원을 징수한다. | 제3조(종류 및 금액) -----<br>-----.<단서<br>삭제>. |